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29,418,508	12,882,555
일반회계	410,110,383	12,303,311
특별회계	19,308,125	579,244
기타특별회계	19,308,125	579,24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11,776,765	353,303
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	141,871	4,256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	632,024	18,961
의료보호비특별회계	1,172,494	35,175
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	47,899	1,437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	5,537,072	166,112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"과 같다.

제 3 조 2015년도 2회추경예산의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15,544,034천원으로 그중 일반예비비는 3,250,000천원이며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12,294,034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본한도액은 9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